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7
----------	-----

발의연월일 : 2012. 2. .

발의자 : 함명섭 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저소득 농업인의 정의(안 제2조)
 -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평창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 지원대상(안 제4조)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
- 지원사업(안 제5조)
 -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지주목, 비료 및 농약 등 농업용 자재구입 등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안 제6조)
 -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
 -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1회 300만원 이내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1) 참조
- 입법예고 : 2012. 1. 27 ~ 2. 15(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집행기관 의견수렴 : 의견반영 결과(붙임 2) 참조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저소득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2.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3.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지주목, 비료 및 농약 등 농업용 자재구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 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저소득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저소득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준용)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지원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
- 지원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농업용 자재구입 등
- 지원기준
 -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
 -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

○ 경지규모별 농가

(단위 : 호)

농가수	0.1ha 미만	0.1~0.5 ha미만	0.5~1.0 ha미만	1.0~1.5 ha미만	1.5~2.0 ha미만	2.0~2.5 ha미만	2.5~3.0 ha 미만	3.0~4.0 ha 미만	4.0ha 이상
4,711 (100%)	70 (1.5%)	1,590 (33.8)	890 (18.9)	425 (9.0)	428 (9.1)	220 (4.7)	218 (4.6)	379 (8.0)	491 (10.4)

제공)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나. 추계 결과

- 지원대상은 5천제곱미터 이하 농가(약 1,590농가) 중 연 10% 범위 이내로 산정 : 159농가
- 소요예산 : 농가당 3,000천원 × 159농가 = 477,000천원
- ※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시행 첫해는 농가 신청이 많았으나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가평군, 옥천군 등)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군비)

작성자	평창군의회 함명섭 의원 외 2인
연락처	(033) 330- 218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세 출	477,000	477,000	477,000	477,000	477,000	2,385,000
지원사업비	477,000	477,000	477,000	477,000	477,000	2,385,000
재원 조달	477,000	477,000	477,000	477,000	477,000	2,38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77,000	477,000	477,000	477,000	2,385,000
	지방세	477,000	477,000	477,000	477,000	2,38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집행기관 검토의견 반영 결과

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	반영결과
<p>제2조(정의) 2. “저소득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u>소유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u> <u>평창군에</u>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농지를 <u>경작농지</u>로 정정 - 기타자산(부동산, 동산, 기타소득)규모를 제한하는 규정 추가 	<p>(일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농업인에 임차농 포함을 위하여 소유농지 규정을 경작농지로 수정 반영 - 기타자산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은 시행규칙 또는 세부세부기준 마련시 현 실정에 맞게 추후 제정하여 시행하면 가능하므로 미반영
<p>제5조(지원사업) 1.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지붕량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p>	<p>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지붕 개량의 정확한 정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엌개량:재래식→현대식 -화장실개량:재래식→수세식 -지붕개량: 주택의 안전을 위한 개량 	<p>(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또는 세부기준 마련시 제정하여 시행하면 가능하므로 미반영
<p>제6조(지원기준) 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u>100분의 70</u> 이내로 한다</p>	<p>지원비율 <u>60%</u>이내로 조정</p>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지원비율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60% 이내로 수정 반영

관 련 법 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어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 가고, 농어촌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어

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①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